

정 관

제정 2000년 10월 23일
개정 2002년 03월 15일
개정 2003년 03월 04일
개정 2004년 03월 12일
개정 2005년 04월 29일
개정 2006년 03월 17일
개정 2007년 03월 16일
개정 2009년 03월 27일
개정 2010년 03월 26일
개정 2011년 03월 25일
개정 2012년 03월 30일
개정 2014년 03월 21일
개정 2015년 03월 27일
개정 2019년 03월 27일
개정 2021년 09월 10일
개정 2023년 03월 27일

개정차수 : 15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제 2 조 목 적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제 4 조 공고방법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 6 조 일주의 금액

제 7 조 〈삭 제〉

제 8 조 주식의 종류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의2 전환주식

제 9 조의3 상환주식

제 9 조의 4 의결권배제주식〈신 설〉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1 조 신주인수권

제 12 조 〈삭 제〉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제 14 조 동등배당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6 조 〈삭 제〉

제 17 조 기준일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발행

제 19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9 조의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19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제 22 조 소집권자

제 23 조 〈삭 제〉

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5 조 소집지

제 26 조 의장

제 27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 3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32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제 32 조의 2 서면투표제

제 3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4 조 이사의 수

제 35 조 이사의 선임

제 36 조 이사의 임기

제 37 조 이사의 보선

제 38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 39 조 이사의 직무

제 40 조 이사의 보고의무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 43 조 〈삭 제〉

제 44 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 4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46 조 〈삭 제〉

제 47 조 〈삭 제〉

제 48 조 위원회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50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51 조 감사록

제 7 장 계 산

제 52 조 사업년도

제 5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 53 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 54 조 이익금의 처분

제 55 조 이익배당

제 55 조의2 주식소각

제 56 조 중간배당

제 57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D HYUNDAI INFRACORE CO., LTD.라 표기한다. <2023. 3. 27 일부개정>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연기관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
2.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업
3. 각종기계, 기기(섬유, 농업, 광업, 전기, 전자, 금속 공작가공, 기체압축기, 재봉, 정밀, 연소, 의료 위생, 사무용, 공장 자동화용 및 동 관련시스템 개발품, 기타 일반 산업기계 및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설치 및 판매업
4. 주물(주철, 알루미늄), 주철강, 단조품, 신소재 및 그 2차 제품 제조, 판매 및 고철매매업
5. 각종 건설기계, 특장차, 버스, 트럭, 승용차 등 수송장비와 그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6. 건설기계, 자동차, 각종기계의 정비 및 대여와 중고건설기계, 중고자동차, 기계류의 판매업
7. 각종 철구조물(철강교, 삭도, 철골, 건축물 등)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8. 발전기, 터빈 및 발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와 기관제조 판매업
9. 각종 육상, 해상, 화학 플랜트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10. 제철, 제강 설비제작 및 설치업
11. 환경오염방지 시설(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설계, 제작, 시공사업
12. 압축가스 및 압력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13. 계량기 제조, 판매 및 검사업
14. 산업용 및 조선용 전기, 전자기계와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15.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 개조, 수리, 시험, 판매업
16. 항공, 자동차, 항만, 해상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17. 항공기용 회전기관, 동력장치 부착기기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 개조, 정비, 시험, 판매업
18. 유압기기 및 동 부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업
19. 인공위성의 위성체, 발사체, 탑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 시험 및 판매업
20. 인공위성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사업
21. 국내외 무역업 및 외국상사 대리점업
22.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23. 공장설비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24. 각종 산업시설 및 공장의 종합엔지니어링 사업
25.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사업
26. 정보처리용역사업, 전산시스템(H/W, S/W)개발 및 판매사업
27. 각종 계측, 시험측정, 검사, 검교정의 대행 및 기술용역업

28. 기술용역업
29. 컴퓨터 응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대여업
30. 종합건설업, 부동산매매, 임대, 주택건설, 공동주택 분양 및 관리사업
31.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사업
32. 환경산업 관련 기술용역 및 측정대행서비스사업
33.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사업
34. 창고 및 공장자동화 설비 용역, 제작, 설치 및 판매사업
35. 고소작업차 제조 및 판매사업
36. 운반기계 및 항만하역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37.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의 설계, 시공업
38.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및 수질처리사업
39. 공장자동화(FA), 사무자동화(OA) 및 데이터 통신산업
40. 영상압축기기 및 멀티미디어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41. 철도운영 및 부대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42. 각종 공항 및 항만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43. <2012. 3. 30 삭제>
44. <2012. 3. 30 삭제>
45. <2012. 3. 30 삭제>
46. 시설, 기계 등과 이에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 대여/투자
47. 할부금융, 연불판매,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어음할인,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 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48. 위 각호 사업과 연관된 투자 및 부대 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 <2007. 3. 16 개정>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infraco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23. 3. 27 일부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 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0 원으로 한다. <2021. 9. 10 일부 개정>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7.3.16 삭제>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5. 3. 27 일부개정>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4. 3. 21 항 번호 변경>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영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9조의2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015. 3. 27 일부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가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3 (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015. 3. 27 일부개정>
-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2021. 9. 10 일부개정>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 9 조의 2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 4(의결권배제주식) <2014. 3. 21 신설>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제 11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1. 9. 10 일부개정>

③ 제 2 항 제 1 호, 제 4 호 및 제 5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2 조 <2006.3.17 삭제>

제 13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1. 9. 10 일부개정>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7. 3. 16. 신설> <2009. 3. 27 일부개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항 제 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012. 3. 30 일부개정>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항 제 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 542 조의 3 제 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2009. 3. 27 일부개정>

4.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009. 3. 27 개정>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009. 3. 27 개정>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10년 내에서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행사가능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을 제외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2. 3. 30 일부개정>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15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09. 3. 27 일부개정>

제 16 조 <2019. 3. 27 삭제>

제 17 조(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3장 사 채

제 18 조(사채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30 신설>

제 19 조(전환사채의 발행) <2012. 3. 30 조항번호 변경>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후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 3. 21 일부개정>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 3. 21 호 번호 변경>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012. 3. 30 조항번호 변경>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 3. 21 일부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 3. 21 호 번호 변경>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 3. 21 일부개정>

제 19 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9. 3. 27 신설> <2021. 9. 10 일부개정>

제 20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7 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22 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23 조(주주제안권) <2007. 3. 16 삭제>

제 24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09. 3. 27 일부개정>

제 25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의 인접지,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소집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26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 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27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8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9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0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 2(서면투표제)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 1 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4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35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7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1. 3. 25 일부개정>

제 39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각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2011. 3. 25 일부개정>

제 40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분기 1 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2007. 3. 16 삭제>

제 4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2012. 3. 30 일부개정>

- ② 이사회회의 의장은 제 4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 3. 30 일부개정>

제 43 조 <2005.4.29 삭제>

제 44 조(이사회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6 조 <2006.3.17 삭제>

제 47 조 <2006.3.17 삭제>

제 48 조(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내부거래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1 조(제 2 항은 제외), 제 42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 42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1. 9. 10 일부개정>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 9. 10 신설>

제 50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 ⑤ 감사위원회는 제 1항 내지 제 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51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 에는 감사의 실행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행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 52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서류(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012. 3. 30 일부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 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제 54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 9 조의 2 의 전환주식, 제 9 조의 3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12. 3. 30 일부개정>

③ 제 1 항의 배당은 제 17 조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021. 9. 10 일부개정>

제 55 조의 2(주식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2007. 3. 16 삭제>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2009. 3. 27 일부개정>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분기배당) <2009. 3. 27 개정>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9. 3. 27 일부개정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2. 3. 30 일부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2009. 3. 27 일부개정>

6. 당해 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2009. 3. 27 신설>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 9. 10 일부 개정>
- ⑤ <2009. 3. 27 삭제>

제 57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10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2.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설립 등기 후 즉시 400,000,000 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9 조의 3, 제 20 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